

제429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0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상정된 안건

- | | |
|---|---|
|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 2 |
|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 | 2 |
|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 2 |
|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 2 |
|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 2 |

(15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임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특별법 5건의 내용 중에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지난번처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 김인호 청장, 기획재정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안창용 정책기획관, 보건복지부 임호근 정책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 강수상 체육국장,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 등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5시08분)

○**소위원장 임미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소위 심사 참고자료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 참고자료는 지난 4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것 중에서 결론을 못 낸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위 심사 참고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피해지역의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생산자단체 그다음 협업경영관리조직이 먼저 정부의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요구하면 그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지난번에 논의하셨던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법조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출하기로 해 가지고 낸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상인가요?

○**전문위원 황충연**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잠깐,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지난번에 논의는 다 했던 건데요. 문구 조정이나 유사 입법례나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정리하기로 했

었는데……

○이달희 위원 마무리하고 넘어가시지요, 두 번 하지 말고.

○전문위원 황충연 이상 2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면……

○소위원장 임미애 23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피해지역 산림경영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살펴보시고.

이것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먼저 22쪽, 23쪽의 정부안 제48조 제1항과 제2항은 자구를 명확하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1항의 내용을 보면 특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단체가 아니고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산림경영특구는 ‘선정’이라기보다는 ‘지정’으로 수정하고, 제2항의 내용은 본문과 각 호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호는 ‘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해서 지정된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4쪽입니다. 제5항의 내용은 지난 소위 때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는 수실류—그때 설명을 드린 밤나무나 감나무나 잣나무 등을 얘기합니다—재배를 위해서도 대부와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제5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이달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아마 보완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같은 시간대에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리를 비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그다음에 45페이지, 환경영향평가의 적용 특례와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당초에는 권한 이양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4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통상은 2회까지 보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 부분도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지난번 논의에서 봤지요?

○전문위원 황충연 예, 논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그러면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조문별 정부 의견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의하실 사항은 1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13번까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13건 중에서 5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고요. 8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합의하에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건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참고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합의가 돼서 삭제하거나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먼저 1페이지, 출입국 특례와 관련해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라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 조세감면과 납부 유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니까 삭제하자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번 근로자의 치유휴직 및 국가의 휴직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자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4번 체육시설 결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논의하셨는데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관련 돼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공공용 시설 설치 시 부담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의원님들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법을 적시해 놓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재난대책비를 별도로 운영을 하니까 삭제하자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계속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황충연 예.

그리고 12페이지,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의견에 대해서 지자체도 동의했습니다.

14페이지, 같은 취지에서 증액교부금 관련해서도 지자체도 삭제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9번, 15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합의해서 의제 조항 24건을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1호부터 해서 24호까지 정리가 되어서 25페이지까지가 24호까지입니다. 저희 오타가 있는데요, 38이 아니라 24호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는 습지보호지역 등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정부 간에 합의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고요.

30페이지, 국가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1페이지, 12번입니다. 권리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의원님들 안을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32페이지, 권한의 위임 및 시행령 위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는데 다만 65조 박형수 의원님 안에 보면 별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부분 이미 개별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지금 13쪽지 중에서 저희가 논의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참, 그 전에 정부 측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합의가 된 것은 빼고요, 지자체하고 서로 의견이 조정이 된 것은 빼고 그 외의 내용만 보고를 해 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하고 합의가 되었거나 혹은 삭제하기로 합의가 되었거나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넘어가셔요.

○**이달희 위원** 경북도의 김호진 실장님.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달희 위원** 박형수 의원안, 이달희 의원안, 이만희 의원안이 일반법에 그리고 시행령에 있다는 이유로 거의 다 이렇게 삭제가 많이 됐는데 지자체하고 합의했다는데, 이게 특별법의 취지는 일반법에는 어디어디까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강한다거나 또 플러스알파로 해 놓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다 혼쾌히 동의해서 지금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의 압력에 의해서 항복한 거예요?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부처의 압력이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도 여러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분과 부처에서 특히 개별 제도 운영이나 또 자체 시행령 개정 등의 협의라든지 예산 지원 조치라든지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안 내용 중에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여지를 많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물론 개별 조항을 최대치로 하는 다다익선으로서 좋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과 위원회 운영 등의 보상·지원 체계가 담보된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도 있는 부분의 타당성이 있어서 그러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중앙부처에 당부드립니다.

경북의 기조실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다들 시행령으로 보완해 줄게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많이 담으면 또 다른 재난에서 이 법이 기준이 되고 이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령으로 많이 담는다 그래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약속된 부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래도 이달희 위원님의 말씀 있었는데 관련해서 행안부가 대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답이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경북도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경북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에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 법이 완성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북도하고 잘 상의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예,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위원** 30쪽에 구상권 관련된 조문이 있는데요.

구상권을 행사한 예가 있습니까, 이 초대형산불이나 작은 산불 포함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일단 답변드리면 제가 사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대형산불이 있을 때 실화자라든지 발화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효성 있는 구상권 행사가 될 수 있으느냐 부분은 계속……

○**김형동 위원** 이것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일어난 서울의 두 배만 한 산불과 관련 돼서 누가 최초에 실화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게 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일반 자연재해하고 달리 실화자,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다. 그동안 그게 우리의 어떤 재해를 구성하는, 논리 구성하는 아마 시발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논의가 제도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아이디어가 보태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한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디 여기가 옆집 태운 것도 아니고 초가삼간 태운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절반을 태워 버렸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둬야 될지.

그냥 논리상으로는 예전처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저는 이게 인재라는 시작보다는 어떤 자연재해라는 쪽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다면 구상권이 과연 성립하겠는가 또는 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혹시 특별하게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김형동 위원** 다음에 연구해 오라고 제도개선을……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제도개선의 연구.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타당하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돼 있는 대로 조금 저희들한테 재량의 여지를 주시면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그런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해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조문별 정부 의견, 첫페이지를 넘기시면 두 번째 목차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조문별 정부 의견, 첫페이지 다음에 목차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2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14번부터 29번까지 나와 있는데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회에 관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소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지자체, 정부 간에 협의한

안을 만드는 것을 위임을 하셨고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관련 조항을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논의가 됐기 때문에 기준에 보내 드렸던 자료에서 좀 추가되거나 수정된 게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번부터 29번 중에서 15번 손실보상금, 16번 배상금 그다음 19번 보상금지급절차 및 이의신청, 20번 지급결정 동의 및 효력, 23번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정비지원, 24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14번부터해서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소위원장실과 정부, 지자체 간의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위원회 관련 조항 정리라고 별도로 저희가 또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위원회 설치 및 점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돼 가지고 1항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1항으로 했고요.

각 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이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 및 점검, 그 지원과 관련한 지원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청구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호 그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회에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겁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자격이 되는 것은 1호의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보건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 그리고 변호사 자격 중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농림·산림 분야. 그리고 5호가 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뒤에 보면 피해자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자단체가 되겠는데요.

피해자단체는 피해지역에 소속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서 피해자단체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까지만 먼저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구성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고, 합의가 된 거고요.

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 그전에는 피해자 대표가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피해자 대표가 들어갔을 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그다음에 다른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추천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두 가지인데요. 요즘 우리 법이 국민 가까이 다가가는 법이잖아요. 예전에는 어려워서 변호사나 누가 읽어 줘야 정확한 법인데 이번에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이름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위원회거든요. 보통 피해지원위원회는 대규모, 예를 들어서 여객기참사나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사망 사건이 희생자가 많은 경우는 이제 피해지원이 중점이 되는데 우리는 피해지원에다가 아까 김형동 위원님 말씀이 서울 2배나 됐다 하니까 복구나 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넓은 지역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다면 ‘·피해지원·복구’나 아니면 ‘·재건’을 넣어서 누가 들어도 피해지원도 하고 복구도 하는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번의 위원회 구성 건인데요.

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행안위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할 건데 이게 기후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산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기후에너지부입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환경부가 들어와야 이 문제가 또 지원하는 문제에서 허가나 산림투자선도지구에도 환경부가 빨리…… 아까 환경영향평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 주기로 법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빠졌다고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혹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 숫자가 12명인데 지금 6개 부처가 있고 환경부가 더 들어오게 되면 7명이 돼서 정부 측 위원이 7명이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은 직관적으로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다음에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신가요? 행안부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재건이나 복구 이렇게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해 주시면 그것 포함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가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문제는 만약 이렇게 되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7명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 구성을 조정하든가 이런 방식이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임미애 위원장님 안을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열어 놨고요. 합의된 것은 제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열거해 놓은 것 아닙니

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예.

○김형동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환경부가 꼭 필요하다,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필요한 게 보면 국토부, 국방부입니다. 이것을 사실 부처 중에 저희 같으면 유산청도 엄청 관계됩니다. 보니까 열다섯 분 한 경우도 있고 12명으로 조정하신 것 같은데 저도 판단은 안합니다만 설계를 하기 나름이겠지요. 위원 하되 소위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열넷 봐 가지고는 제일 많이 관계되는 게 환경부, 국토부 이런 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설계하는 방식을 그냥 열어 둘 것인지 아니면 열거해서 한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결론은 못 내리는데 환경부나 국토부는 계속…… 오늘은 어디 가셨어요?

○소위원장 임미애 국토부는 법사위 회의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형동 위원 그게 뭔 상관인데요, 왜 갔는데요.

○소위원장 임미애 지난번에는 왔었는데…… 끝나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김형동 위원 적어도 여기에 계속 출석하신 부처는 해당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소위원장 임미애 예.

○이달희 위원 행안부 본부장님, 12·29 여객기 참사 특위는 20명이지요, 특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지금 위원 수는 안 갖고 있는데 아마…… 20명 맞다고 합니다.

○이달희 위원 거기는 피해자 지원이 아주 중점적인데도 위원의 수가 좀 많거든요. 위원장님, 12명에서 조금 더 올려도…… 굳이 12명으로 아주 위원회가 슬림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회의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12명 이내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던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달희 위원 국토부, 환경부.

○소위원장 임미애 환경부,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유산청도 회의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방부는 더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국방부는 왜 필요해요?

○김형동 위원 더 필요하지요. 군사시설 엄청 많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아까 논의 과정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관련 부처를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출석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처들을 모두 참석시키려면 건건이 하다 보면 사실 많아질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때는 배석해서 발언하고 의결권은 갖지 않는 참석자가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그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온 의견을?

○**전문위원 황충연** 제 생각에는 위원 수를 한없이 늘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하시는, 당초의 임미애 의원님 안도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렇게 하시지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 배석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하나 달아 놓으면 될까요?

○**전문위원 황충연** 뒤에 사실조사나 그게 있기 때문에……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배석은 별개로 위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미애** 그게 내용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없는데……

○**전문위원 황충연**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가면 사실조사……

○**소위원장 임미애** 아, 이건가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당연직은 정확하게 명시해 두는 게 그 부서가 특별법에 소속 심이나 또 지원과 복구에 적극성을 위해서 좀 명시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국무총리가 관계 공무원 불러서 회의할 수 있다,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이라서 임무를 약간 방기할 수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것 좀 한번 조정해 주시지요.

이렇게 되면 당연직 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숫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모든 부처를 다 열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문구를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이따 보고를 한번 드리고 다음을 먼저……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구 정리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임미애** 그 외 다른……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의견 하나 더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김형동 위원** 임미애 위원장 안에 2호에 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것도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 보면, 지금 경상북도 실장이 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번번이 부를 수도 있겠지만 위원으로 위촉해서 피해지역의 행정 쪽에서 바라보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소위원장 임미애** 6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6호에요?

○**소위원장 임미애** 예,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아, 진작 얘기하시지……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것은 일단 필요한 부처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내용 정리하는 걸로 이따가 다시 논의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황충연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사실조사 의견 제출인데요.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 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관련 단체나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을 수는 있는데 좀 더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황충연 10페이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례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등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에 보면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그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피해 입은 주민들 중에 종교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호소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것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회의 심의하는, 논의하는 내용 중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이외에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뭐뭐뭐를 열거 안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 자체에 다 열려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그것도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원회의 내용으로 넣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법에다가, 이 특별법의 취지를 충분히 생각한다면 법의 조문에 괄호를 치고 포함할 수 있도록 넣어 주는 것도 한번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여서.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다른 법에 의해서도 보장이 되면 써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정부 측 의견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걸 열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계속 열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열거가 안 된 것은 안 되는 거냐’ 혹시 그럴 수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열어 두시고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일 창고라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 자체도 자치단체라든지 피해자 단체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구조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견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임미애 예.

○허성무 위원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한 게 포괄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그걸 또 따로 열거를 하게 되면 ‘열거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미 포괄적으로 다 규정돼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혹시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 이건 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입니다.

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가 돼서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진행……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20페이지, 비밀준수 등 의무 및 별칙 이 조항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위원회 위원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그러면 위원회 관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 수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소위원장님 안은 위원 수가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걸 늘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정부 관계 공무원들이 많으면 사실 위원회 의결 사항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정도 동수나 이렇게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위원 수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임미애 위원장님 안에 15명으로 돼 있으니까 15명으로 한번 맞춰 보시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명 정도로 하고, 이게 그래도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분들하고 임명직으로 들어오는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정부 측 인사가 너무 많으면 표결의 경우에 어느 한쪽으로 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15명 정도로 고려하고요. 참여하는 부처를 환경부, 국토부, 유산청, 이 정도 이렇게……

○**허성무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이미 6명에다가 김형동 위원님 의견대로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유산청을 넣으면 10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원장 임미애** 예, 이걸 바꿔야 돼요.

○**허성무 위원** 4개 중에서 2개를 김형동 위원님이 줄여 주셔야 되겠는데?

○**김형동 위원** 제가 뭐……

○**소위원장 임미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부처를 열거하지 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명시해 놓고, 국무총리가 이것 할 때 위원 임명과 해촉을 필요한 경우에 했다가 해촉하고 임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위원으로 다 정해 놓고 실제로 회의 때 참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부처 공무원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실제로 정부 내 위원회에서 표결을 한다거나 이렇게 운영되기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서 사전에 다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공무원들 많이 들어온다고 ‘저놈들이 마음대로 할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그냥 관계 부처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 보시기에 형식적인 위원회 같거든요. 그런데 당연직으로 기재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부, 복지부, 중소벤처, 환경부, 국토부, 이렇게 각 부서가 명시되어야 ‘이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겠구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이 위원회의 당연직의 모습으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공무원으로 해 놓으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들을 다 같이 열거해서, 방금 행안부의 이야기처럼 이게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공무원 위주로 내지는 부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10개를 다 열거하지요. 그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가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사실 지역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하고 잠깐 이야기한 건 부처를 열거하고 ‘그 중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허성무 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소위원장 임미애** 부처를 죽 열거를 해 놓고 ‘그중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6명을 넘지 않는 걸로 하는 거지요.

○**허성무 위원** 12명으로 제한하고?

○**소위원장 임미애** 예.

○**허성무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김형동 위원님 의견을 말씀 주시지요.

○**김형동 위원** 일단 15명 하고요.

○허성무 위원 15명으로 하고?

○김형동 위원 예, 하고.

○소위원장 임미애 15명으로 하고 ‘그중 몇 명’ 해서 과반을 넘지 않는 숫자로 하는 걸로 하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동 위원 허성무 위원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대로 갑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장님, 그러면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5인으로 하고 공무원은 7명, 그러니까 과반을 넘지 않으니까 7명인데요. 그러면 부처에 들어가야 되는 게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유산청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예.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10쪽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에서도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지원에서 보면 1항에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가 한 번 되었던 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관계 부처에서는 난색을 표하셨는데 기재부 의견 한 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기재부에서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추경과 예비비 등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1조 9000억 가까운 지원금이 이미 집행되었고 이 법도 빨리 통과되기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싶은데요. 일단 다른 법률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여러 법들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 텐데 그건 주로 2조·3조의 총론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참사에는 국가가 피해를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구체적으로 공무원 몇 명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법은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도 있고 또 대통령이 확정하는 문제도 있고 또 국회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역할도 있고 이런 건데 2급 공무원 몇 명 모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 오버라이드 override)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정도로도 충분할 거고 굳이 이걸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좋은 지원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관계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특별법의 취지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기재부의 공직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거기에서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할 거니까 이미 거르는 거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반드시 ‘하여

야 한다'고 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가 당연직으로 이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부처의 공직자들이 과반이 됩니다. 같이 논의를 하고 국가재정이나 모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은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담당관님께서 아래 부임하셨지요, 월요일 날?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우리가 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담당관님의 '걱정하지 마라'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정부, 우리 측 의견하고 국회가 조율해서, 앞쪽에도 보면 왜 이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내지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걸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관님을 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이 법의 취지부터 개별 조문에 대해서 나름 심도 있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정부하고 함께, 특히 기재부가 재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법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가장 고려를 많이 해서 의견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위원장께서도 지원위원회가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법이 원래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임의가 아니고 당위로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것 같거든요. 그런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저께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입법 효과를 늘리는 부분 또 우리가 그동안에 심도 있게 논의해 왔던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가 위원장이 제안한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기재부 국장님의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은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의사결정을 기속되도록 해 놓으면 오히려 위원회가 잘 작동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면 다 되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의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오히려 하는 데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적을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또 예비비도 지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가 좀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논의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으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속 재량으로 해 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스트릭트하고 더 안 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는 정책 목적은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는 것은 15명 이것에서 공무원 7명, 8명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막 스트릭트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할 수 있다'로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진용도 다 바뀌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해 줘야 되겠다, 안 할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최대한 저희들이 큰 문제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이 조문 관련해서는 몇 차례 회의 때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됐는데 우선 제6조에 위원회 구성 문제, 지금 현재 누가 위원으로 구성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걸 떠나서 이 조문의 위원회 의사결정은 정부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잖아요. 6조에 따른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22조 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부분을 보면 정부 의사결정의 객관성·합리성·현실성을 담보로 한 위원회 6조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결정한 부분을 놓고 22조에 와서는 지원하는 부분을 다시 임의 기준으로 넣겠다, 이것은 법체계 자체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6조를 보면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의 여러 가지 피해 복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6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법리적인 법체계상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은 특별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입법 취지가 감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정부 측에서 ‘기속 재량으로 하면 오히려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저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법체계상 또 문구상 또 정부의 의사결정이라는 그 구조를 볼 때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혹시 허성무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허성무 위원** 없습니다. 해당 지역, 피해 지역 위원님들의 간접함이 담긴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야 한다’ 그 의견들이 반영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그것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위원님, 만약에 이 법 2조·3조의 총론 부분에 정부는 초유의 산불 사태에 대해서……

○**소위원장 임미애** 소리 잘 안 들려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초유의 산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쇼크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2조·3조·4조·5조 총론 부분에 있다면 다른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지원 법률하고 유사합니다. 그렇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회법·헌법·국가재정법하고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안부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2급 공무원이 그 위원회 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께 사전 승인을 받고 고위 당정청을 미리 열고 이 양간 꼬이는 문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시는데 일개 위원회, 공무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 반영하도록 하는 법은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량 규정으로도 참사 지원 특별법을 보면 충분히 할 것 같고요. 정부도 충분히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충분히 의지가 있고 하겠다 하는데 왜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할 수 있다’로 꼭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3법과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서천호 위원 아니, 피해 복구에 충분히 지원을 할 것이고 믿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문구를 ‘하여야 한다,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한다면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정말 아주 신중하고 스트릭트하게 접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리인데요, 그러면 뭔가 결정하기 전에 또 용산에 보고를 하고 당정 협의를 하고 후단에 있는 절차를 유연하게 해야 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지원법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해서 정부가 편성을 하고 국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절차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서천호 위원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제가 지금 다른 특별법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 가지고 잠시 확인을 좀 한 후에 이 논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김형동 위원 나는 저 국장님 마음에 들어.

○소위원장 임미애 국장님이요?

○김형동 위원 예, 마음에 들어.

○소위원장 임미애 국장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좀 있었나 봅니다, 김형동 위원님이.

○김형동 위원 재정 예산통이신데, 그렇게 나라 살림을 꼼꼼히 관리해 오신 분인데 왜 내년 예산을 그렇게 확정했습니까? 다음에 차관·장관 되시면 진짜 그 기조를 유지하십시오.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타법 찾아 보신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일반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에서 조금은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그 말씀은 뭐라 그럴까, 예결위장이나…… 정부 부처가 개편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예산담당관을 하셔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법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네 분이고 위원장님 계신데 국장께서 저희 의견을 수용해 주시는 게 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일단 사례를 찾을 동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충연 그러면 위원회 관련되는 조항은 일단 그것 하나 빼고 넘어가고요.

다시 조문별 정부 의견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모두에 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합의해서 삭제하기로 한 사항은 빼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1번 지원의 원칙이 되겠는데요. 지원의 원칙과 피해 유형인데 피해 유형은 삭제를 하고 지원의 원칙에 대해서—정부안인데요—‘국가 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

○전문위원 황충연 58페이지입니다.

22번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인데 ‘국가는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관련해서 이것은 지자체하고 서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의견만 하나……

○소위원장 임미애 예.

○김형동 위원 58쪽, 굳이 보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의 때 중기벤처부에서 누가 나오셨었지요? 지금 계십니까, 자리에?

○소위원장 임미애 지금 계시지 않나요?

○김형동 위원 안 계세요?

○소위원장 임미애 오늘 안 오셨네요.

○김형동 위원 안 오셨어요?

○소위원장 임미애 예.

○김형동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본부장님께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 말입니다 기본법에서 11월 말인가 영을 바꿔서 보강하겠다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서 내용이 되면 저희가 행안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일단 설명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80페이지입니다.

28번 배상금·보상금 등의 환수 및 벌칙입니다.

배상금·보상금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지원금으로 통일이 됐고요. ‘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

응하는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짓 또는 착오 등에 의한 지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는 별칙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조항입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8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칙이 되겠는데요, 먼저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해서 그 조가 나열이 되는데,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 법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는 조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논의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한번 들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소위원장 임미애** 이 부칙 조항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견 들었을 때는 다른 부처들은 6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즉시 시행하되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령도 좀 만들고 준비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3개월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한 3개월 정도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도 만들고 또 그 뒤에 하위 법령 만드는 준비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준비하는 시간 정도는 필요하고 다만 그 안에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절차들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리고 뒷부분의 별첨 조항 관련해서 혹시 부처 의견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그중에는 지금 보니까 삭제된 조문들도 있고 없어지거나 이런 조문들이 있어서 어떤 조문을 3개월 정도 유예할지는 저희들한테 한번 시간을 주시면 확정된 조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3개월 할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께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임미애 위원장님이 주로 내신 안이 지원 부분인데요. 지원 부분은 이미 지원된 부분도 우리 법령에 담겨 있고 기재부가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분도 많이 담

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임미애 위원장이 낸 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로 즉시 시행하는 항목으로 정리해 주시고 부처 협업이나 시행령을 고쳐서 우리가 산림 투자선도지구의 내용이라든가 처음 이 법에 담기는 내용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뽑아서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과 저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 가 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당기는 2개월은 안 되는가 한번 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이것을 3개월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 같은 것을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해 가지고 시행하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그게 2개월인지 3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법안이 확정이 안 됐고 시행령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입법예고 하고 만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 하면 부담은 시행령을 2개월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만드는 것부터 법제처 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하다 보면 규제심사부터 영향평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했을 때는 다들 6개월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가고 나면 저한테 ‘왜 당신이 3개월로 했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한 3개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임미애 위원님 보좌관님들이 법률안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시차를 뒀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크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는 법률 보면 즉시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6개월, 1년 통일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매우 시급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칙이 돼야 되고 행정 절차상 준비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것은 좀 예외로 두되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는 분들은 하루가 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께 보고드릴 때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평가라 그럴까요,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오전 내에 이걸 6개월로 주장하는 정부 측하고 한참 이야기가 됐는데 다행히 본부장께서 3개월로 이야기하셔서, 저희 생각에는 이걸 2개월로 당기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소요기간들이 필요한 것을 감안한다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대신, ‘다만’으로 달려 있는 별첨 조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하고 서로 정리해서 최대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을 하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그렇게 정리해서 별첨 부분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리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 어렵다는 검찰도 6개월 만에 한다는데……

○소위원장 임미애 혹시 전문위원님, 무슨……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몇 조, 몇 조, 몇 조는 3개월 후에 시행한

다 이렇게 제가 이해한 것 맞습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예.

○전문위원 황충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와 관련된 특별법 조문을 찾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사례가 없네요. 그리고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 내용의 조문이 없어서 이게 ‘지원할 수 있다’ 내지는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 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 찾은 건 가요, 아니면 혹시……

○이달희 위원 지원 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위원장 임미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순간인데요. 어떻습니까, 정부 측 본부장님?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위원님, 초유의 초대형 산불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충격도 크고 저희는 국가적인 지원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이 특별법도 최대한 빨리 공포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문 이야기를 드린 것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법 체계상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태원 참사라든지 가습기 그다음에 무안,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 때는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총론에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총론에는 있는데요. 각론에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개별 결정한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저희가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위원회에서 하면 지원의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혹시 아쉬움이 있는 위원님 의견 주시고요.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법률에 없다고 하는데 여객기 참사 구제 관련 특별법안 25조에 보면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고.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피해자 지원 부분이지요. 1호에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9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현재 22조 2항을 따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에서 해석은, 제가 왜냐하면 추모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심의·의결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당연히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에 필요한 부분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조문을 축소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산불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를 보면 이 내용을 1항, 2항에서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분은 당연 사항으로 심의·의결하고 지원 부분은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하여야 한다’지만 이것을 조문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담는 것이 다르다라는 입장이 지금 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하게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결정을 ‘지원한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입장이나 지금 정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의 의지를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문구를 꼭 수정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지금 현재 정부안 1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간 해석 부분을 도입을 하자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 측에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구를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허성무 위원 그러면 정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서천호 위원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 의견 한번……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허성무 위원 아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현 문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주장 사이에 그냥 ‘지원한다’로 이렇게 중간 단계로 했을 때 이걸 정부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지금 문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 특별법 2조에 ‘정부는 초대형 산불의 피해 지원을 정부는 해야 된다’ 이런 총론적인 문구가 있다면 이미 다른 법률에도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하여야 한다’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총론적인 그런 문구가 있다면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결정되면 다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고요.

○소위원장 임미애 잠깐만, 총론에 이게 ‘지원한다’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서천호 위원님 지적은 이겁니다. 22조 1항을 끝 해서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사실상 강제 규정하고 같은 걸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하여야 한다’와 ‘한다’라는 것하고의 차이……

○서천호 위원 ‘반드시 하여야 한다’와 ‘한다’는 다른 의미지요. 조금 한 발짝 양보를 해주시라는 얘기지 그것을……

○이달희 위원 중간이니까 할 수도 있고 하여야 하기도 하고 중간에……

○서천호 위원 왜냐하면 2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사실 정부 측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첨삭을 할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표기하면 괜찮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하고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피해 주민들 정서적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장님, 받아 주세요.

○이달희 위원 2번 항이 완충 장치가 있으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참고로 이 법 3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항,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구 때문에 너무…… 의지를 충분히 확인하셨다면 ‘할 수 있다’로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김형동 위원 아니, ‘한다’ 서천호 위원님 의견으로……

○소위원장 임미애 ‘한다’로?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미가, 앞뒤가 같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위원회의 위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용 제정보다. 위원회가 총리 산하 각 부처에서 와 가지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정리했는데 그 결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물론 판단은 있어야겠지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가 맞겠지만 담당관님께서 위낙 재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셔 가지고 ‘한다’ 정도는 수용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정이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관님의 의지를 저희가 저것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문구 정리하는 것은 서천호 위원께서 다른 참사에 관한 법률도 같이 특위에 들어가 가지고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합당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앞의 총론 파트에 있는 ‘지원하여야 한다’ 부분이 다른 사회 전환에 대한 지원의 디폴트 값이거든요. 스텐더드한 정부의 의무·책무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법에서만 특별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대통령이고 예결특위 위원장이고 국회의장이고 모든 이런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오버라이딩(overriding)하는 이런 것을 만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형동 위원 그건 예결위하고 대통령실에서 정할 문제고.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계속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여서요. 정부 측이 저렇게 완강하게 나온다면 저희가 총론에 이미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박혀져 있는 관계로 이 조문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다’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형동 위원 아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후 운영될 때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이 결정되잖아요. 총론에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흔히 말해서 의지만 가

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문에, 위원회가 한 결정이 사실상 입법에 준하게 효력을 나타내려면 여기가 ‘수 있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지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오늘 저희가 빨리 이렇게 논의가 된 건 많은 부분을 위원장님하고 제가 낸 각론들을 다 위원회의 역할로 해서 삭제를 대체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결정 사항이 곧 앞으로 지원과 복구의 로드맵이 되고 앞으로 비전이 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꾸며 놨기 때문에 서천호 위원님 제안대로 ‘지원한다’로, 약간 애매는 하지만 ‘지원한다’ 쪽으로 해서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께서 결심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시겠습니까, 기재부?

제가 지금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와 관련한 법안하고 죽 봤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라는 피해 주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 측의 의지를 확인하고 문구를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워낙 강경하십니다. 그래서……

○**이달희 위원** 국장님, 한마디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위원님, 이것은 어떤 재정운용 체계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금 하나를 만들더라도 법률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산 사업 하나를 만들어도 다 수백 가지 법률로 만들고 있는데요. 일부 공무원 위원회에서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것을 구속을 합니다. 이런 것은 재정운용, 예산편성권이나 국회 예산심의권이나 앞뒤로 많이 충돌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법과 같은 수준으로 해도 충분히 잘 작동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아니, 그런데 타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구절이 있으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충돌이 생기겠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국가 전체의 예산을 짜거나 결정하는 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오버라이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는 다소 지나친 우려일 가능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강력한 의지가 여러 차례 피력이 된 관계로 이 조문은 ‘할 수 있다’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다른 데 가면 다수결로 하자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는 그것도 안 물어보고……

○**소위원장 임미애** 다수결?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오랜만에 표결하면……

(웃음소리)

○소위원장 임미애 표결 할까요?

○이달희 위원 표결을 한번 하시지요. 우리 법안소위에서 위낙 표결을 많이 해 봐서……

○소위원장 임미애 저희는 표결을 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법 제목, 법안 제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먼저 할까요, 일단 머리 식히는 겸?

저희 다섯 가지 법안이요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제가 볼 때는 밑에 이만희 의원님하고 이달희 의원님이 낸 제목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좋을지.

의견 주시지요.

서천호 위원님,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서천호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 임미애 의원님 법안명도 '2025년'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날 산불 전체가 아니고 지역 그것도 되어 있고.

○김형동 위원 재건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그것은 아까 위원회 이름에……

○소위원장 임미애 법안에다가 넣어서……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상'이라는 단어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보상'이라는 단어가 이 법체계에 맞지 않아서 빼기로 했기 때문에 '피해구제 및 지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만희 의원님하고 이달희 의원님이 같은 제목을 내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이달희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의원님의 법안이 딱 제목으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그전에 하나만 더요.

아까 제가 제안한 게 위원회명인데 피해지원에 복구나 재건 중에 하나 넣어 달라고 했는데 어떤 명칭을 넣어 주실 것인지? 1번 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 조항 정리에서.

○소위원장 임미애 아직 저희가 정한 건 아닌데요. 피해복구 및 지원 위원회…… 일단 의견 들어온 건 그렇습니다, 피해복구 및 지원 위원회.

○이달희 위원 지원을 먼저, 원래 피해지원 및, 복구가 뒤에니까 지원을 앞에 쓰시고……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피해지원 및 복구 위원회 이렇게 할까요?

○이달희 위원 복구가 좋습니까, 재건이 좋습니까?

○김형동 위원 재건이 낫지요.

○이달희 위원 재건으로 좀 광의의 의미로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새로운 개념의 산림청의 사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피해지원 및 재건 위원회.

○소위원장 임미애 약간 북한식 느낌이 확 들어 가지고……

○이달희 위원 북한 같아요? 그러면 창조, 재창조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아니요.

○이달희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합니까? 재건으로 하시지요.

경북의 기조실장님, 혹시 이것 하면서 미리 이미 도민들께 알린 네이밍이 있습니까? 복구나 재건 중에 어떤 게 많이 알려져 있나요?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법령이나 위원회의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안내 설명한 부분은 여건이나 단계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산불피해나 후속조치를 위한 행정조직 체계상 현재 산불피해재창조본부로 의정하고 있고 그 내부 부서는 저희들이 재건 사업단이라는 표현으로서 재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요청하신다면 복구 아니고 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임미애 지원 및 재건 위원회.

○전문위원 황충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제 모든 논의가 끝났는데 아까 마지막 남은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로 조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 30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위원장님이세요. 저희는 위원들로서 그걸 서포트해 드리려고 하는데……

○소위원장 임미애 그래도 의지 확인을 하고자.

이로써 안건 심사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자구 수정도 해야 되고 중복된 것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후에……

15일 날? 15일인가요?

○전문위원 황충연 제가 말씀……

○소위원장 임미애 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황충연 예,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자구를 한번 정리해서 최종안을 15일 날, 월요일 날 소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소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며칠날요?

○전문위원 황충연 15일 날 오후 정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법안이, 이게 저희가 모여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회람하는 방식인 건가요?

○전문위원 황충연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의원실로 전달이 될 겁니다. 살펴보시고요 혹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17일 날 대정부질의가 있는 날이어서 17일 날 대정부질의 있기 전에 저희가 소위를 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혹은 17일 날 오후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을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9월 25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법안이 정리된 내용으로 회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더 의결이 있거나 뭐 할 게 있나요?

○소위원장 임미애 있으면 안 됩니다. 있어도 넣어 두셔야 됩니다.

○이달희 위원 다음에 개정합시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7인)

김형동 박정현 서천호 이달희 이원택 임미애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은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림청

청장 김인호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김기환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안창용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임호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신재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정우진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홍영근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